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범위에서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2조제19호, 안 제3조제4항 신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과 제3자의 상계 및 압류를 금지함(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신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안 제30조).
-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주주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행위규칙을 신설함(안 제36조의3 신설).
-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

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II. 검토의견

- 판매자등에게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안 제25조의4제10항)

안 제25조의4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판매자,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함.

그런데, 우선변제권 부여는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그 부여 범위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또한, 이미 안 제25조의4제6항에서 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실익도 없으므로, 안 제10항의 우선변제권자의 대통령령 위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안 제25조의4제10항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원	안	수 정 의 건
<신 설>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 의 보호) ① ~ ⑨ (생 략)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 의 보호) ① ~ ⑨ (생 략)
		⑩ 정산대상금액에 관 한 청구권을 가지는 <u>판 매자등,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u> 는 전 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 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 리가 있다.		⑩ ----- ----- <u>판</u> <u>매자등은</u> ----- ----- ----- ----- ----- ----- ----- -----.
		⑪ · ⑫ (생 략)		⑪ · ⑫ (원안과 같음)

○ 대주주 변경등록(안 제33조의3 및 제43조제1항제7호)

안 제33조의3은 제28조제2항1)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 제28조는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외에 같은 조 제1항2)에

- 1)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결제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서 전자금융업자의 허가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을 규율하면서, 등록보다 규제가 강한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을 규율하지 않는 것은 법령 내 체계와 맞지 않는바,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한편, 안 제43조제1항제7호는 변경등록한 전자금융업의 대주주가 제3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³⁾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변경등록 후 사후적으로 대주주가 제32조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동 개정 조항은 최초등록 시 대주주가 사후적으로 제32조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편법적으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바, 원안의 취

2)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과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지를 반영하여 등록 후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변경 허가·변경등록 없이 그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변경등록한 경우를 허가·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수정의견을 금융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안 제33의3 및 제43조제1항제7호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원안	수정의견
<u><신설></u>	제33조의3(<u>대주주 변경등록</u>)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u>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u>	제33조의3(<u>변경허가·변경등록</u>)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u>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원안과 같음)

에 따르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부과하는 행정벌인 과태료를 사법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부과하는 결과가 됨. 사법상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 부과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미정산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동 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안 제36조의3 및 제51조제1항제8호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원	안	수 정 의 건
<신 설>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의 행위규칙) ① (원안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신 설>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 급결제대행업자가 제1 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		제51조(과태료) ① ----- ----- ----- ----- -----		제51조(과태료) ① ----- ----- ----- ----- -----

현행	원안	수정의견
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원안과 같음)
<신설>	4. · 5. (생략)	4. · 5. (원안과 같음)
4. · 5. (생략)	6. · 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 7. (원안과 같음)
<신설>	8.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기한 내에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11. (생략)	9. ~ 14. (현행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9. ~ 14. (원안과 같음)
<신설>	15. (생략)	15. (생략)
② ~ ④ (생략)	② ~ ④ (생략)	② ~ ④ (생략)

○ 별도관리기준 및 외부관리기준 위반 시 조치(안 제42조제3항)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건전경영지도 대상에 기존의 허가 전자금융업자 외에도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면서, 건전경영지도 사유에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및 안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그런데, 현행법 제42조제3항은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현행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및 안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경영의 건전성”과 직접 관련된 조항이 아님. 따라서, “별도관리기준 또는 외부관리기준” 위반 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이용자 보호’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관리기준 또는 외부관리기준” 위반 시 그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별도로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안 제42조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원안	수정의견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② (생략)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② (원안과 같음)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	③-----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 ----- 경영지도기준, 제25조의2에 따른 별도관리기준(선불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제25조의4에 따른 외부관리기준(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한정한다)-	③ ---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 ----- ----- ----- ----- ----- -----

현행	원안	수정의견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 -----.
	<u><신설></u>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불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u><신설></u>	⑤ (생략)	② (원안 제42조제5항과 같음)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② ----- ----- ----- ----- ----- ----- -----	② ----- ----- ----- ----- ----- ----- -----

현행	원안	수정의견
다. 1. 2. (생략)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 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 령을 어긴 때 4. (생략) ③·④ (생략)	--. 1. 2. (생략)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1. 2. (원안과 같음) 3. ----- 제40조제2항, 제42조 제3항 또는 제42조의2 제1항----- ----- 4. (원안과 같음) ③·④ (원안과 같음)

○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안 제49조제1항제4호·제5호)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을 각각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안 제25조의4에 따라 외부관리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 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4호·제5호).

그런데,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을 각각 별도관리나 외부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안 제51조제1항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신설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반면, 현행 제25조의2 및 안 제25조의4에는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별도관리의무 및 외부관리의무로부터 당연히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제25조의2 및 안 제25조의4에

각각 목적 외 사용금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원안	수정의견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 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 ----- ----- ----- ----- ----- ----- ----- ----- ----- ----- ----- ----- ----- -----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

현 행	원 안	수 정 의 견
	1. ~ 3. (생략) ② ~ ⑫ (생략)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② ~ ⑫ (생략)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